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75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 강유정·김영배·김준혁

위성곤 • 박용갑 • 김한규

박희승 • 서영교 • 문대림

박 정ㆍ김용민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차단이 매우 중요하나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법영상 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속성 이 저해되어 불법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34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4(응급조치)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 2.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 3.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
 -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4(응급조치)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기재된 범죄에 대
	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
	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
	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
	제・차단 요청
	2.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
	<u> </u>
	3.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
	런 절차 안내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